

우리가 흔히 일용직과 일당직을 혼용하는 데 일용직과 일당직은 다른 개념이다.

일용직과 일당직을 잘못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부당해고 문제와 주휴수당 등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용직과 일당직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① 일용직

일용직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당일)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도 동시에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이는 근로계약 기간(고용관계)의 장단, 상시 지속 여부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상용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 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었다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서 1주일 이상 또는 1개월 · 1년 이상의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일당직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요건을 갖춘 일용직에 대해서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일용직 부당해고 문제

일용직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종료가 1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용직 근로계약을 수차례 반복 체결하여 계약의 형식만 일용직 근로자일 뿐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계속 고용의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일당직 근로계약을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오인하여 근로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무기 계약직 (중규직)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개념)

'무기 계약직'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정년은 보장이 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보다 근로조건의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 일당직

일당직은 임금의 산정 단위를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임금은 산정 기간에 따라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의 산정 단위를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무방)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일당직의 고용형태는 일용직이 될 수도 있고 1일을 초과하는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형태도 가능하다.

▶ 일당직의 고용형태

일당직의 고용형태는 일용직, 1일을 초과하는 계약직, 정규직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 일당직 부당해고 문제

일당직 근로계약을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오인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다.

▶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용 기간이 1일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단, 1일을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속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도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매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②

③

④ · 가

⑤

일용직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시정 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500만원 이내)가 부과된다.

▶ 일용직 4대보험

사회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

▣ 단시간 근로자 vs 초단시간 근로자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팀장
Web ▷ <http://tax4041.co.kr/>
Daum cafe ▷ <https://cafe.daum.net/transtax>

1.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에 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운용합니다.

1일 단위(당일 근로계약 당일 종료)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당연히 해고관련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연속 고용 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 6일 이상 연속 근로 시 주 단위로 주휴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소정근로 - 일반적으로 8시간)보다 단 1시간이라도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주5일~6일)을 근무 시 유급휴일로서 주휴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연차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주휴, 연차,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급여 처리 및 4대보험

실무적으로 회계 상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고 잡금 처리를 하거나 사업소득(3.3%)으로 처리 하는 경우도 있으나 3개월 미만의 일용직이라면 분리 과세방식으로 원천징수, 3개월 이상 일용직, 일반 단시간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 및 건강, 국민연금(일용직 1월 미만 근로자는 건강 및 국민연금 적용제외)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최근 1달에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③
- 소득세법시행기준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010.12.27 제목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4,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4,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2015.02.03 제목개정)]

① 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1994.12.31 개정)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1994.12.31 개정)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 타자 · 촉사 · 경비 등의 업무 (1994.12.31 개정)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1994.12.31 개정)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1994.12.31 개정)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1994.12.31 개정)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994.12.31 개정)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1994.12.31 개정)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1994.12.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1994.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2020.03.13 개정)

▣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적용 제외)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적용 제외)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용근로자 ▣

☞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재보험법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단시간근로자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15.6.30, 2018.7.31, 2019.6.11 제29813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20.7.1, 2021.6.29] [[시행일 2022.1.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소득의 범위)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강보험법 일용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제14183호(병역법)] [[시행일 2016.11.30]]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 ④ 삭제 [2018.12.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